

	<h1>보수 규정</h1>	문서번호	MSU-
		제정일자	2005. 3. 1.
		최종개정일자	2016. 1. 11.
		담당부서	행정지원처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목포과학대학교(이하 “대학”이라 한다)에 재직하는 교직원의 보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대학 교직원의 보수지급에 관하여는 다른 규정에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단, 연봉제 교직원은 연봉제 규정에 따른다.

② 계약제 교직원, 특수 신분교수, 임시직 및 기타 특정업무를 위하여 임용된 경우에는 임용 시 약정한 보수 또는 보수계약서에 의하여 지급 한다.

③ 이 규정에 규정된 이외의 교직원의 보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학교법인 영신학원 정관 및 공무원 보수규정 등을 참작하여 총장이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보수” 라 함은 봉급과 기타 각종 수당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2. “봉급” 이라 함은 직무의 곤란성 및 책임의 정도와 재직기간 등에 따라 직급(직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별 호봉별로 지급되는 기본 보수를 말한다.
3. “수당” 이라 함은 직무여건 및 생활여건 등에 따라 지급되는 부가보수를 말한다.
4. “승급” 이라 함은 일정한 재직기간의 경과 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현재의 호봉보다 높은 호봉을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5. “보수의 일할계산” 이라 함은 그 달의 보수를 그 달의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는 것을 말한다.

제2장 보 수

제4조(봉급) ① 교직원의 봉급 월액은 대학 재정여건 등에 따라 총장이 정한다.

② 제2조 제②항에 해당하는 계약제 교직원의 보수는 신규임용, 재임용, 승진임용 날로부터 1년 단위로 계약<별표 1>으로 정하여 매월 균등 지급한다.

제5조(호봉확정) <삭제>

제6조(보수책정) ① 교직원은 직급 및 호봉 승급에 따라 보수를 책정하며, 호봉 승급은 매년 1월 1일과 7월 1일에 한다.

② 제2조 제②항 중 계약제 교직원은 경력과 직급에 따라 정한 기본보수를 보수 월액으로 정하고, 보수 외 수당(가족수당, 학비보조수당, 직책수당 등 변동성 있는 보수)은 해당되는 경우 규정에 따라 가산하여 정한다.

③ 제2조 제②항에 해당하는 계약제 교직원은 보수 재계약시 전년도 기본보수를 기

준으로 성과평가에 의하여 총장이 정한다.

④조교, 임시직원의 보수는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3장 보수지급

제7조(보수지급의 방법) 보수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인 명의의 예금계좌로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

제8조(보수지급일) ①보수의 지급일은 매월 17일에 지급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총장이 정하여 보수지급일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②보수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때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

제9조(보수 계산) ①보수의 계산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하며, 발령일을 기준으로 하여 실제로 근무한 일수에 의하여 계산 지급한다.

②교직원의 보수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규채용·승진·전보·승급·감봉 기타 어떠한 경우의 임용에 있어서도 발령일을 기준으로 그 월액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③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감액된 봉급을 지급받는 자에 대하여 다시 봉급을 감액하고자 하는 경우(동시에 2가지 이상의 사유로 봉급을 감액하고자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중복되는 감액기간에 한하여 이미 감액된 봉급 액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다.

④2년 이상 근속한 교직원이 면직(금고이상의 형을 받거나 탄핵·파면·해임에 의하여 면직되는 경우와 그 달 1일자로 면직되는 경우 및 군인사법 제40조4호 및 제6호의 경우를 제외한다) 또는 병역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휴직된 때에는 면직 또는 휴직된 날이 속하는 달의 봉급 전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 징계처분 기타의 사유로 봉급이 감액중인 교직원에 대하여는 감액된 봉급을 계산하여 당해 월봉급 전액을 지급한다.

제10조(휴직기간중의 보수지급) 학교법인 영신학원정관 제43조(휴직교원의 처우)의 규정을 적용하여 지급한다.

제11조(징계처분 기간의 보수감액) ①징계처분에 따른 보수의 감액은 관련법령에 의한다.

②징계처분 중에 있는 자가 징계에 관하여 다른 법령을 적용받게 된 경우에는 징계 처분 당시의 법령에 의하여 보수를 감액 지급한다.

제11조의2(결근기간의 봉급감액) 결근한 자로서 그 결근일수가 당해 교직원의 연가일수를 초과한 경우에는 그 초과한 결근일수의 매 1일에 대하여 봉급일액의 3분의 2를 감하여 지급한다.

제11조의3(파견근무 및 겸직근무자의 보수지급) 교직원 중에 파견근무 및 겸직근무 시간의 범위 안에서 보수의 일정액을 가감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4장 수당지급

제12조(기말수당) <삭제>

제13조(정근수당) 교직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매년도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정근수당을 지급한다.

제14조(관리업무수당) 총장, 사무처장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관리업무수당을 지급한다.

제15조(직급보조비) 교직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매년도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직급보조비를 지급한다.

제16조(연구비) 교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별도로 정하여 연구비를 지급한다.

제17조(연구보조비) 교직원에게는 예산 범위 안에서 별도로 정하여 연구보조비를 지급한다.

제18조(장기근속수당) <삭제>

제19조(직책수당) 교직원에게는 맡은 직책에 따라 자기개발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별도로 정하여 직책수당을 지급한다.

제20조(특정업무수당) ① 특정업무를 맡은 교직원에게는 그 직무의 곤란성 또는 책임 정도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업무수당은 월정액 또는 일당으로 지급하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21조(정액급식비) ① 교직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매년도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정액급식비를 지급한다.

② 조교의 지급방법은 총장이 따로 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22조(교통보조비) <삭제>

제23조(명절휴가비) 교직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매년도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명절휴가비를 지급한다.

제24조(가계지원비) <삭제>

제25조(정근수당가산금) 교직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매년도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정근수당가산금을 지급한다.

제26조(가족수당) 교직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매년도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가족수당을 지급한다.

제27조(자녀학비보조수당) 교직원 후생복지로 예산의 범위 안에서 매년도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자녀학비보조수당을 지급한다.

제28조(성과상여금) ① 재직 중인 전임교원 및 직원(일반직)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전년도 교직원성과평가 결과에 의하여 성과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성과상여금 적용대상, 지급방법, 지급시기, 지급금액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29조(강사료) 강사료로 책정된 금액의 범위 안에서 책임 담당시간을 초과하여 강의하는 전임교원에게는 초과 강의수당을 지급하며, 시간강사에게는 담당강의시간에 따라 강사료를 지급한다.

제5장 보 칙

제30조(퇴직금) 퇴직금은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에 따라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관리공단에서

지급하는 보수로 한다. 다만,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비적용 대상자는 관계법규에
준하여 지급한다.

제31조(임시직원) 임시직원에 대한 사항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총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

제32조(준용) 이 규정에 정하여 지지 않은 사항은 공무원보수규정,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등 관련법령을 준용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0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12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1월 11일부터 시행한다.

계약제 교직원 보수 계약(통보)서

목포과학대학교 총장(이하 "갑"이라 한다)과 _____ (이하 "을"이라 한다)는 다음과 같이 보수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계약기간) _____년 ____월 ____일부터 _____년 ____월 ____일까지(____월간)

제2조(계약보수)

- 보수월액 _____원(W _____원)
- 가족수당, 학비보조수당 등 변동성 있는 보수외 수당 월 추가지급

제3조(보수의 지급) 계약기간 매월 균등하게 교직원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제4조(보수외 급여) 비과세급여, 복리후생비 성격, 특정업무수당, 초과수당 등은 규정에 따라 지급한다.

제5조(연도별 보수계약서) ①최초 계약 이후의 매 연도별 보수계약서는 당해 연도 보수계약통보서로 대체하는 것을 동의한다.

②"을" 은 보수계약통보서에 이의가 있는 경우 1개월 이내에 사무처에 이의신청을 한다.

제6조(보안의무) "갑"과 "을"은 보수 계약에 대한 보안의무를 준수하고, 이를 위반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을 감수한다.

제7조(기타사항) 이 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기타 사항은 보수규정에 따른다.

20 년 월 일

(갑) 목포과학대학교
총장 _____(인)

(을) 학 과(부서) _____
주민등록번호 _____
성 명 _____(인)